

본 자료는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시행령(102/2013/ND-CP)”의 베트남어본과 영어본의 원문을 토대로 한국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세부분구와 표현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호치민 총영사관 최태호 영사 -

정 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번호 : 102/2013/ND-CP

2013년 9월 5일, 하노이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시행령

2001년 12월 25일자 정부조직법에 근거하여

2012년 6월 18일자 노동법에 근거하여

노동보훈사회부 장관의 제의에 따라

정부는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노동법 조항을 상세히 규정·안내하는 시행령을 공포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적용 범위

이 시행령은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노동허가증의 발급, 노동허가증 없이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의 강제출국에 관한 노동법 규정의 세부 시행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적용 대상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이하 “외국인근로자”라고 한다)
 - a) 근로계약에 따른 근무
 - b) 기업 내에서의 이전(재배치)

- c) 경제, 상업(무역), 재정, 은행, 보험, 기술과학, 문화, 스포츠, 교육, 직업훈련 및 의료에 관한 계약 또는 합의의 이행
- d) 계약에 따른 서비스 공급
- d) 서비스 판매 마케팅
- e) 베트남 법률 규정에 따라 베트남에서 활동이 허가된 국제조직 및 외국 비정부조직에서의 근무
- g) 자원봉사
- h)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를 행하는 자
- i) 관리자(manager), 운영 책임자(executive officer), 전문가, 기술자
- k) 베트남에서의 계약 및 프로젝트의 실행 참여

2. 외국인근로자의 사용자는 다음을 포함한다.

- a) 기업법, 투자법 또는 베트남이 회원국으로 가입한 국제협정에 따라 활동하는 기업
- b) 외국 또는 국내 도급자(원청업자, 하도급자)의 도급 참여, 계약 실행
- c)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은 기업, 기관, 조직, 도급자의 대표사무소, 지사
- d) 국가기관
- d) 베트남에 있는 정치조직, 사회정치조직, 업종별 사회정치조직, 사회조직, 업종별 사회조직, 외국 비정부조직, 국제조직
- e) 법률 규정에 따라 설립된 공공서비스 기관
- g) 베트남에 있는 국제조직 또는 외국 프로젝트 사무소
- h) 베트남에서 경영협력계약에 따른 외국측 계약자의 운영 사무소
- i) 법률 규정에 따른 베트남 내 법률가(변호사) 실행 조직
- k) 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되고 활동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회
- l) 법률 규정에 따라 설립된 기업협회
- m) 법률 규정에 따라 경영활동이 허가된 개인, 사업자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시행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기업 내에서 이전하는 외국인근로자(Reassigned foreign workers)”는 베트남에서 상업적 주재를 위해 설치된 기업의 관리자, 운영 책임자, 전문가 및 기술자로서, 기업 내에서 상업적 주재를 위해 일시적으로 이전하고 외국기업에 의해 최소 12개월 이전에 채용된 자이다.
2. “자원봉사자(Volunteers)”는 베트남이 회원국으로 가입한 국제협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월급을 받지 않고 자원봉사 형식으로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이다.
3. “전문가(Experts)”는 외국으로부터 전문가로 인정 받은 외국인근로자, 또는 학사 학위 이상 또는 이와 유사한 수준의 기술자(engineers)로서 해당 전문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외국인근로자이다.
4. “기술자(Technicians)”는 전문 기술훈련을 최소 1년 이상 받고, 해당 전문 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외국인근로자이다.

제2장 노동허가증의 발급 · 재발급 및 노동허가증 없는 외국인근로자의 강제출국

제1절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업무 결정

제4조 외국인근로자 사용 수요

1. 매년 사용자(도급업자는 제외함)는 베트남근로자가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업무에 대해 외국인근로자 사용 수요를 결정하고, 사용자의 본사가 소재한 중앙산하 성(省) 및 직할시의 인민위원회(이하 “성급 인민위원회”라고 한다)의 위원장에게 설명 · 보고할 책임이 있다. 수행 과정에서 외국인근로자 사용 수요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각 업무에 대해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도록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승인서를 발행한다.

제5조 도급업자의 외국인근로자 사용 수요

1. 도급 업무 실시를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사용이 필요한 경우, 발주서류 및 요청서류에 도급 업무 실시에 필요한 외국인근로자의 인원수, 수준, 전문능력, 경력을 명시하여야 한다. 베트남근로자가 도급 업무 요건을 충족하고 실시할 수 있는 업무, 특히 일반업무 및 전문기술훈련을 받을 필요가 없는 업무(비숙련업무)에 대해서는 외국인근로자 사용이 금지된다.

도급업자의 평가·선정은 발주서류 및 요청서류에 명시된 근로 사용에 관한 규정, 베트남법의 입찰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2. 계약을 실시할 때, 투자자는 감사를 실시하고, 도급업자가 베트남근로자 및 외국인근로자 사용을 발주서류 및 요청서류 상에 합의된 내용에 따라 실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3.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기 전에, 도급업자는 도급 업무가 실시되는 곳에 소재한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외국인근로자 채용 예정 업무에 대한 베트남 근로자 채용 요청서(투자자의 승인서를 포함)를 제출할 책임이 있다.

도급업자가 발주서류 및 요청서류에 명시된 근로자 인원수를 변경,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외국 도급업자의 근로자 사용 수요의 변경, 보충 방안을 승인하여야 한다.

4.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지방 기관·조직이 도급업자에게 베트남근로자를 소개·공급하도록 지시한다. 도급업자가 베트남근로자 500명 이상에 대한 채용 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베트남근로자 500명 미만에 대한 채용 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베트남근로자를 소개·공급받지 못하는 경우,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도급업자가 베트남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한 업무에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도록 하는 것을 검토·결정한다.
5. 투자자는 법률 규정에 따라 도급업자가 외국인근로자의 채용·사용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지도·촉구·감사하고, 외국인근로자가 베트남 법률 규정을 준수하는 지를 조사·관리할 책임이 있다. 아울러, 노동보훈 사회부의 규정에 따라 분기마다 도급업자의 외국인근로자 채용·사용·관리 현황을 노동보훈사회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6. 노동보훈사회국은 공안기관,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분기마다 지방의 도급업자가 고용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베트남 법률 규정을 준수하는 지를 감사한다.

제6조 외국인근로자 사용 보고

정기적으로 6개월 및 1년마다, 노동보훈사회국은 지역의 외국인근로자 사용 수요, 승인된 외국인근로자 사용 수요, 외국인근로자 사용 현황을 노동보훈사회부에 보고할 책임이 있다.

제2절 노동허가증이 불필요한 외국인근로자

제7조 노동허가증이 불필요한 외국인근로자

1. 노동법 제172조 제1항에서 제8항까지 규정된 외국인근로자

2. 기타 노동허가증이 불필요한 외국인근로자는 다음을 포함한다.

a) 세계무역기구(WTO)와 베트남 간의 서비스보장협정에 따른 경영, 통신, 건설, 유통, 교육, 환경, 재정, 의료, 여행, 문화·연예, 운송 등 11개 서비스산업 범위에 속한 기업 내 근로자 이전

산업무역부는 위에 명시된 11개의 서비스산업 범위에 속한 기업 내에서 이전하는 외국인근로자를 확인하기 위한 근거, 절차를 안내한다.

b) 베트남의 권한 있는 기관이 외국과 체결한 공적개발원조(ODA)에 관한 국제협정의 합의 또는 규정에 따라 ODA 자본이 사용되는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의 연구·건설·심의·조사·평가·관리·실시, 전문기술 자문 서비스 제공 또는 기타 임무 수행을 위하여 베트남에 입국하는 자

c) 법률 규정에 따라 외교부로부터 통신, 신문·잡지 활동허가를 발급받은 경우

d) 베트남에 있는 외국 외교대표기관 또는 국제조직의 관리 하에 있는 국제 학교에서 가르치도록, 해당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베트남에 보낸 외국 기관·조직의 교사

d) 자원봉사자

이조 제2항 제d호 및 제d호에 규정된 외국인근로자는 베트남에 있는 외국 외교대표기관 또는 국제조직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e)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학교, 직업훈련전문대에서 자문, 강의, 과학연구 업무를 실시하는 석사학위 이상 또는 석사와 비슷한 수준을 가진 자 대학교, 직업훈련전문대는 외국인근로자가 자문, 강의, 과학연구 업무를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g) 중앙 국가기관, 성급 기관, 중앙급 사회정치조직이 법률 규정에 따라 체결한 국제협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베트남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

중앙 국가기관, 성급 기관, 중앙급 사회정치조직은 해당기관이 체결한 국제협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가 베트남에 입국하였음을 노동허가증 발급 권한을 가진 기관에 서면으로 확인·통보하여야 한다.

h) 정부 총리가 노동보훈사회부의 요청에 따라 결정한 경우

제8조 노동허가증이 불필요한 외국인근로자 승인 절차

1. 노동보훈사회국은 노동허가증이 불필요한 외국인근로자를 승인하는 권한을 가진다.

2.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업무를 시작하는 날로부터 최소 7영업일 전에 외국인근로자가 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곳에 소재한 노동보훈사회국에 노동허가증이 불필요한 근로자임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3. 노동허가증이 불필요한 근로자의 승인 요청을 위한 신청서류를 다음과 같다.

a) 노동허가증이 불필요한 근로자 승인 요청서류

b) 외국인근로자의 이름, 나이, 성별, 국적, 여권번호, 근무 개시일과 만료일, 업무가 명시된 외국인근로자 명단 리스트

c) 노동허가증이 불필요한 외국인근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들

노동허가증이 불필요한 외국인근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들은 원본 1부 또는 사본 1부를 제출한다. 베트남 법률 규정에 따라 증명 서류들이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사공증은 면제되지만, 베트남어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아야 한다.

4. 신청서류들이 충분히 접수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노동보훈사회국은 사용자에게 승인 서류를 보낸다.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확한 이유와 답변이 명시된 서류를 보낸다.

제3절 노동허가증의 발급

제9조 노동허가증 발급 요건

1. 법률 규정에 따라 민법상 완전한 행위능력을 갖출 것
2. 업무요건에 부합하는 건강을 갖출 것
3. 관리자, 운영 책임자, 전문가 또는 기술자일 것

베트남에서 건강검진·치료를 실습하거나, 직접 건강검진·치료를 수행하는 자 또는 교육, 직업훈련 분야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는 건강검진, 치료, 교육, 직업훈련에 관한 베트남 법률 규정 상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4. 베트남 법률이나 외국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하였거나 형사범죄로 기소된 자가 아닐 것
5. 권한 있는 국가기관으로부터 외국인근로자 사용에 관하여 서면으로 승인을 받을 것

제10조 노동허가증 발급 신청서류

1. 노동보훈사회부 규정에 따른 사용자의 노동허가증 발급 신청서류
2. 보건부 규정에 따라 외국 또는 베트남에서 발급된 건강검진서
3. 서류 제출일로부터 지난 6개월 내에 발급되어진, 베트남 법률이나 외국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하였거나 형사범죄로 기소된 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
4. 관리자, 운영 책임자, 전문가, 기술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일부 직업, 업무에 대해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전문기술 수준을 입증하는 서류를 대신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할 수 있다.

- a)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발급된 전통 예술인 인정서
- b) 외국 축구선수의 경력증명서
- c) 베트남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발급된 외국 비행기조종사에 대한 비행기 운항 면허증
- d) 베트남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발급된 비행기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비행기 유지·보수 허가증

5. 외국인근로자 사용에 관한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서
6. 서류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 2매(규격 : 4cm × 6cm, 모자 미착용, 얼굴은 정면 응시, 두 귀가 노출되고 얼굴 윤곽이 뚜렷하게 촬영, 안경 미착용, 사진바탕은 흰색)
7. 법률 규정에 따른 유효한 여권 사본 또는 여권을 대신할 수 있는 기타 서류
이 조 제2항,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서류들은 원본 1부 또는 사본 1부를 제출한다. 서류들이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베트남과 관련 외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한 국제협정, 상호주의 원칙 또는 법률 규정에 따라 영사공증이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베트남 법률 규정에 따라 영사공증을 받고 베트남어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아야 한다.
8.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타 서류들
 - a) 이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b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베트남 내에 있는 외국기업으로 상업적 주재를 위해 파견된 것에 관한 외국기업의 서류, 베트남에서 근무하기 전 최소 12개월 이전에 외국기업에 의해 채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 b) 이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c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합의내용이 포함된 베트남측과 외국측의 공동사업자간에 체결한 계약서 또는 합의서가 있어야 한다.
 - c) 이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d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베트남측과 외국측의 공동사업자간에 체결한 서비스 제공 계약서, 외국인근로자가 베트남에서 상업적 주재 없이 최소 2년 이상 외국기업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 d) 이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d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외국인근로자가 서비스 공급 협상을 위하여 베트남에 들어온다는 서비스 공급업체의 서류가 있어야 한다.
 - d) 이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e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베트남 법률 규정에 따라 베트남에서 활동이 허가된 국제조직 및 외국 비정부조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e) 이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h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서비스 공급업체가 외국인근로자를 상업적 주재를 위하여 파견한다는 서비스 공급업체의 서류가 있어야 한다.

g) 베트남에서 상업적 주재를 하고 있는 기업의 운영에 참여하는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i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외국기업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이 항에 규정된 서류들은 원본 1부 또는 사본 1부를 제출한다. 베트남 법률 규정에 따라 증명 서류들이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사공증은 면제되지만, 베트남어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노동허가증의 유효기간

노동허가증의 유효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고, 다음의 경우 중 하나에 따른다.

1. 체결할 예정인 근로계약 기간
2. 외국측이 외국인근로자를 베트남에 근무하도록 파견하는 기간
3. 외국측과 베트남측의 공동사업자 간에 체결한 계약서 또는 합의서의 기간
4. 외국측과 베트남측의 공동사업자 간에 체결한 서비스 공급 계약서 또는 합의서의 기간
5. 서비스 공급업체가 서비스 공급 협상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베트남으로 파견하는 서류에 명시된 기간
6. 베트남 법률 규정에 따라 베트남에서 활동이 허가된 국제조직 및 외국 비정부 조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에 명시된 기간
7. 서비스 공급업체가 상업적 주재를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베트남으로 파견하는 서류에 명시된 기간
8. 외국인근로자가 베트남에서 상업적 주재를 하고 있는 외국기업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에 명시된 기간

제12조 노동허가증 발급 절차

1. 외국인근로자의 근무 개시 예정일로부터 최소 15영업일 이전에,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모든 시간을 근무하는 곳에 소재한 노동보훈사회국에 노동허가증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인근로자가 하나의 중앙산하 성 및 직할시에서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허가증 신청서류를 사용자의 본사가 소재한 노동보훈사회국에 제출한다.

2. 충분한 서류가 접수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노동보훈사회국은 노동보훈사회부 규정의 양식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에게 노동허가증을 발급한다. 노동허가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확한 이유와 답변이 명시된 서류를 보낸다.

3. 이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a호에 규정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외국인근로자가 노동허가증을 발급받은 후 근무 개시 예정일 이전에 베트남 노동법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의 내용이 발급된 노동허가증에 명시된 내용에 반하면 안된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사용자는 노동허가증을 발급한 노동보훈사회국에 근로계약서 및 발급된 노동허가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절 노동허가증의 재발급

제13조 노동허가증을 재발급하는 경우

1. 노동허가증의 분실, 훼손 또는 성명·생년월일·국적·여권번호·근무지 등의 노동허가증 내용이 변경된 경우
2. 노동허가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제14조 노동허가증 재발급 신청서류

1. 노동보훈사회부 규정에 따른 사용자의 노동허가증 재발급 신청서류
2. 서류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 2매(규격 : 4cm × 6cm, 모자 미착용, 얼굴은 정면 응시, 두 귀가 노출되고 얼굴 윤곽이 뚜렷하게 촬영, 안경 미착용, 사진바탕은 흰색)

3.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타 서류들

- a) 이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규정된 노동허가증 재발급의 경우에는, 법률 규정에 따른 유효한 여권 사본 또는 여권을 대신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발급된 노동허가증이 있어야 한다(노동허가증을 분실한 경우는 제외).
- b) 이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규정된 노동허가증 재발급의 경우에는, 노동허가증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5~15일 이내에 있는 유효한 노동허가증 (노동허가증을 분실한 경우는 제외), 이 시행령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진서,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발행된 외국인근로자 사용 승인에 관한 서류, 그리고 다음의 서류 중 하나가 있어야 한다.

- 외국측이 외국인근로자를 베트남에 근무하도록 파견한 서류
-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합의내용이 포함된 베트남측과 외국측의 공동사업자간에 체결한 계약서 또는 합의서
- 외국측과 베트남측의 공동사업자 간에 체결한 서비스 공급 계약서 또는 외국인근로자가 베트남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협상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베트남 법률 규정에 따라 베트남에서 활동이 허가된 국제조직 및 외국 비정부조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 베트남에 있는 국제조직 및 외국 비정부기구에서 계속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서비스 공급업체가 상업적 주재를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베트남으로 파견하는 서류
- 외국인근로자가 베트남에서 상업적 주재를 하고 있는 외국기업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이 호에 규정된 서류들은 원본 1부 또는 사본 1부를 제출한다. 베트남 법률 규정에 따라 증명 서류들이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사공증은 면제되지만, 베트남어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노동허가증 재발급 절차

1. 이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동허가증 재발급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 a) 외국인근로자는 노동허가증의 분실, 훼손을 발견하거나 또는 노동허가증에 변경할 내용이 있는 경우, 3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다.
 - b) 외국인근로자로부터 보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사용자는 노동허가증을 발급한 노동보훈사회국에 노동허가증 재발급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이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노동허가증 재발급의 경우에는, 노동허가증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5~15일 이전에 사용자는 노동허가증을 발급한 노동보훈사회국에 노동허가증 재발급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충분한 노동허가증 재발급 신청서류가 접수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노동보훈사회국은 노동허가증을 재발급한다. 노동허가증을 재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확한 이유와 답변이 명시된 서류를 보낸다.
4. 이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a호에 규정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동허가증을 발급받은 후 근무를 계속할 예정일 이전에 베트남 노동법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의 내용이 재발급된 노동허가증에 명시된 내용에 반하면 안된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사용자는 노동허가증을 발급한 노동보훈사회국에 근로계약서 및 재발급된 노동허가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재발급되는 노동허가증의 유효기간

1. 이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규정된 경우에 대하여, 재발급되는 노동허가증의 유효기간은 기 발급되었던 노동허가증의 유효기간에서 외국인근로자가 노동허가증 재발급 신청시까지 근무한 기간을 차감한 기간이다.

2. 이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규정된 경우에 대하여, 재발급되는 노동허가증의 유효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고, 다음의 경우 중 하나에 따른다.

- a) 체결할 예정인 근로계약 기간
- b) 외국측이 외국인근로자를 베트남에 근무하도록 파견하는 기간
- c) 외국측과 베트남측의 공동사업자 간에 체결한 계약서 또는 합의서의 기간
- d) 외국측과 베트남측의 공동사업자 간에 체결한 서비스 공급 계약서 또는 합의서의 기간
- ㄸ) 서비스 공급업체가 서비스 공급 협상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베트남으로 파견하는 서류에 명시된 기간
- e) 베트남 법률 규정에 따라 베트남에서 활동이 허가된 국제조직 및 외국 비정부조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에 명시된 기간
- g) 서비스 공급업체가 상업적 주재를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베트남으로 파견하는 서류에 명시된 기간
- h) 외국인근로자가 베트남에서 상업적 주재를 하고 있는 외국기업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에 명시된 기간

제5절 노동허가증의 취소 및 외국인근로자의 강제출국

제17조 노동허가증의 취소

1. 노동허가증이 취소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a) 노동허가증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서류에 명시된 내용이 허위인 경우
- b) 노동허가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c) 외국인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노동허가증에 명시된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d)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 ㄸ) 근로계약의 내용이 노동허가증에 명시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 e) 경제, 상업(무역), 재정, 은행, 보험, 기술과학, 문화, 스포츠, 교육, 직업훈련 및 의료에 관한 계약서 또는 합의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종료된 경우

- g) 외국측이 외국인근로자를 베트남에 근무하도록 파견하도록 한 것을 철회하는 서류를 통보한 경우
- h) 사용자가 영업을 종료한 경우
- i) 외국인근로자가 법원에 의하여 징역형, 사망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k) 권한 있는 기관·조직이 외국인근로자가 베트남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것을 이유로 노동허가증 취소를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

2. 노동보훈사회국은 발급한 노동허가증을 취소할 권한을 가진다.

제18조 외국인근로자의 강제출국

1. 이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노동허가증이 없는 외국인근로자는 베트남 법률 규정에 따라 강제출국한다.
2. 노동보훈사회국은公安기관에 베트남에서 노동허가증 없이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를 강제출국하도록 요청한다.

조직, 개인이 베트남에서 노동허가증 없이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노동보훈사회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외국인근로자가 노동허가증 없이 베트남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노동보훈사회국은公安기관에 해당 외국인근로자를 강제출국하도록 요청한다.
- 4.公安부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 a) 베트남에서 노동허가증 없이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를 강제출국시키는 절차, 권한에 관하여 안내한다.
- b) 노동허가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은 외국인근로자, 또는 충분한 노동허가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서류를 제출한 외국인근로자에게 비자발급에 관하여 안내한다.
- c) 노동보훈사회부와 협조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노동허가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은 외국인근로자의 명단을 제출하는 절차에 관하여 안내한다.

제3장 시행 규정

제19조 시행 효력

1. 이 시행령은 2013년 11월 1일자로 시행효력을 갖는다.
2.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는 2008년 3월 25일자 정부 시행령 34/2008/ND-CP,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는 2008년 3월 25일자 정부 시행령 34/2008/ND-CP의 일부 조항을 변경·보충하는 2011년 6월 17일자 정부 시행령 46/2011/ND-CP는 이 시행령의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3. 이 시행령의 시행일까지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노동허가증은 새로운 노동 허가증으로 바꿀 필요가 없다.

제20조 시행 책임

1. 노동보훈사회부 장관,公安부 장관, 산업무역부 장관, 보건부 장관은 이 시행령의 시행을 안내한다.
2. 장관, 부급 기관의 장, 정부 산하기관의 장,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이 시행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정부총리

Nguyen Tan Dung